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3 호
----------	--------

제출년월일 : 1998년 11월 20일

제출자 : 예산군수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됨.

□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 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실무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도록 하여 업무 혼선 방지(안 제6조)
-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도록 조문 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참 고 사 항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64조
2.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4.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예산군조례 제 호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되며,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